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조지연·박충권·박준태

김석기 • 박성민 • 백종헌

강대식 • 박덕흠 • 김종양

고동진 · 엄태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본 개정안은「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」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·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장화기금법안」(의안번호 제2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